



▶ COVER STORY:
세관장 확인대상의 전반적
사항 및 2010 년 변동
사항 1

▶ FTA NEWS:
FTA 의 성공!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한다..... 2

▶ VOICES FROM THE FIELDS:
글로벌경쟁의 창과 방패!
관세를 적극 활용하자 3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⑦..... 4

▶ WHERE IS GRACE CHANG?: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6

▶ ABOUT WRITERS..... 6

○ 발간호 | ○ 제 17 호 | ○ 2010 년 1 월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세관장 확인대상의 전반적 사항 및 2010 년 변동 사항

『관세법제 226 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 HSK 별로 정해두고 있으며, 수출입요건관련 법령 54 개(통합공고 계기 49 개, 비 계기 5 개)중, 세관장이 확인하는 것은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된 30 여 개 법령이며, 세관장확인 여부와 수입자의 의무사항은 별개의 문제로서, 세관장확인사항이 아니라도 개별법령상 의무사항을 수입자는 준수해야 한다.

I 세관장확인대상물품

1.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관세법제 226 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의 【별표 1】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외국 환거래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원자력 법』 등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권총, 소총과 같은 무기, 양귀비 씨, 컴퓨터단층 촬영기와 같은 물품은 수출 시에 각 개별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임을 세관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관세법제 226 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별표 2】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식물방역법』 등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서 키보드, Laptop, Personal Desktop 등은 수입시에 각 개별 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 한 것 임을 세관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3. 세관장확인생략물품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12 조에 의한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물품이나 시행령 19 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물방역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등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각 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에 대하여 확인 한다.

II 2010 년 주요 개정내용

2010 년 개정된 「관세법 226 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별표 14-1 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 시에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수출허가서가 필요하였으나, 동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수출허가

확인서를 구비 하여야 한다.
또한 동 법령의 적용 물품에 대해 HSK10 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으로 전환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적용물품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은행 총재,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신고서가 필요하였으나 동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세관장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신고필증',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 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을 구비 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지방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의 수출신고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1) 『식품위생법』 해당 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 요건확인 기관으로서 국립검역소장을 삭제하고 식품등과 수산물에 대한 필요서류의 명칭을 변경 하였다.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별표 14-1 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에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수입허가서가 필요하였으나, 동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수입허가 확인서를 구비 하여야 한다.

또한 동 법령의 적용 물품에 대해 HSK10 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으로 전환 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 적용물품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은행 총재,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신고서가 필요하였으나 동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세관장의 지급수단 등의 수입신고필증',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 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 필증' 을 구비 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중 탈크를 추가 하였으며 이를 수입 시에는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취급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를 구비 하여야 한다.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에 대해 요건확인기관 중 국립검역소장을 삭제

하였다.

6) 다음의 물품을 요건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추가 하였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물품 - 지방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의 폐기물수입신고 확인서
- ② 전파법 적용대상물품 - 전파연구소장의 방송통신기기 인증 확인서
- ③ 전기통신기본법 적용대상물품 - 전파연구소장의 전기통신자재 인증 확인서

FTA News

FTA의 성공...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한다.

FTA 시대도래

현재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FTA 체결이 급증하고 있고, 세계무역의 절반 이상이 FTA 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한다. 이렇듯 FTA 는 세계경제 질서의 새로운 현상으로 이제는 누구도 무역환경에서 FTA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그러나 FTA효과와 FTA발효만으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FTA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하여는 수출입관련 기업 스스로가 FTA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FTA효과... 중소기업에 달렸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대외수출기업은 약 8만여 업체이며, 우리나라 전체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약30%대로 대기업의 수출비중(약 70%)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조 중소기업의 약 60%가 대기업 수급기업으로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안이 바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이 대기업에 의하여 이뤄지고, 수출 대기업의 수급기업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실제로 당해 물품을 생산 제조하고, 완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원자재의 내역, 가격, 수급방법을 잘 알고 있는 생산자인 중소기업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수출에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비중과 그 역할, 대기업과의 수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FTA활용의 성패 여부가 중소기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 FTA시장 이렇게 준비해라.

Step 1. FTA 에 관심을

대기업의 경우 FTA의 적용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와 같은 투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¹⁾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FTA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가 없으며, 관심이 없다면 알 수가 없다. 실제로 무역협회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FTA 를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FTA 를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Step 2. 우리회사의 취급품목을 파악해라.

FTA활용 대상은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이다. 수입물품의 경우 FTA로 인해 종전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고, 수출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을 통해 해외 시장 내에서 부과되던 관세를 낮게 적용 받음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역거래에서 모든 수출입물품은 품목번호(HS-code)라는 아라비아숫자의 조합으로 거래되는데 특히 FTA에서는 HS Code를 기준으로 협정관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양허대상 품목 등이 정해진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회사의 취급품목(수출입물품, 공급물품, 수급물품 등)에 대한 품목번호를 파악하는 것 만으로도 현재 FTA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인지 아닌지의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맺은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원재료와 완성품의 HS Code변경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취급물품의 품목번호를 파악한다는 것은 FTA활용 측면에서 보면 여러모로 유용하다.

Step 3. 어려움을 토로하고 적극 요구하라.

FTA 체결이 급증함에 따라 수급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자인 대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받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요청을 수행함에 FTA 이해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많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영세한 중소기업 스스로가 해결함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원산지판정 협조요청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외수출중소기업들은 해당산업별 협회 또는 조합, 더 나아가서는 유관정부부처 등 사회전반에 한 목소리를 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당위성을 알려 산업별 FTA 세미나, 원산지시스템 구축 또는 FTA 전문컨설팅의 자금지원 등 실제로 업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준 혁

(jlhee@customsservice.co.kr)

⁽¹⁾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fta.korea.kr/>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무역협회 FTA 포탈 <http://fta.kita.net/>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기관에서 FTA 의 의미, 효과, 흐름 등 일반적인 지식부터 협정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작성방법 등 전문적인 지식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경쟁의 창과 방패 관세를 적극 활용하자

최근 10 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번진 것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관세인하다. 20 세기에 체결된 세계 FTA 는 모두 해야 124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발효중인 FTA 는 무려 240 여 개다. 이중 120 여 개가 최근 9 년 사이 발효된 것이다. 왜 세계 각국은 대외 무역정책에서 관세에 집중하는가? 관세가 무역에 창과 방패로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WTO 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유효한 경쟁수단인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새해 벽두인 5 일 중국산 강선에 대해 최고 289%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더니 10 일에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용접강관에도 5.15%의 반덤핑관세 부과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해 12 월 30 일에도 중국산 강관에 대해 10.36%~15.78%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발표한 적이 있다. 반덤핑관세는 덤핑물품에, 상계관세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싸게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다. 수출국의 반발에도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에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방패로 자주 활용한다. 개발도상국 가운데는 인도가 반덤핑관세를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이름 높다. 이런 고율관세 부과와는 반대로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0 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번진 것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관세인하다. 20 세기에 체결된 세계 FTA 는 모두 해야 124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발효중인 FTA 는 무려 240 여 개다. 이중 120 여 개가 최근 9 년 사이 발효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4 년 칠레와의 FTA 가 발효된 이래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과의 FTA 가 발효되었다. 미국, EU 와는 FTA 가 타결되었고, 캐나다, 멕시코 등 11 개국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FTA 의 핵심목표는 교역상대국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촉진이다.

시장공격의 창을 쥐는 것이다.

왜 세계 각국은 대외 무역정책에서 관세에 집중하는가? 관세가 무역에 창과 방패로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WTO 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유효한 경쟁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보호를 위한 관세부과나 FTA 를 통한 관세인하 활용 사례가 '별로'다. 정부나 기업 모두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반덤핑관세는 그 동안 일부 물품에 부과된 실적이 있고 현재도 12 개 품목에 대해 부과 중이다. 그러나 상계관세는 1967 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다.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 3 국 물품이 우리나라에는 수입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FTA 이용률이 어떠한가는 지난해 말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조사결과가 잘 보여준다. ADB 가 우리나라, 일본,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5 개 609 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20.8%에 그쳐 일본의 29%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국(24.9%) 보다 낮고 필리핀(2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ADB 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 수출입관련 원산지 기준에 대한 무지를 꼽았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2008 년 말 금융위기 이후 밀어닥친 세계적

경기침체에서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고전하는 가운데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매출 비중을 오히려 높이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 고무적인 일이다. 상거래에서 경쟁의 핵심은 품질과 가격, 그리고 서비스다. 국내 상거래나 무역거래나 다를 바 없다. 관세는 무역에서 가격경쟁력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인터넷이 일상적인 환경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런 경쟁요소에 점점 더 민감해진다. 정보가 날이 갈수록 더 풍부하게 널리 전달되기 때문이다. 상품시장에서의 글로벌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나 산업보호를 위해 새해엔 좀 더 관세가 창과 방패로 유효하게 활용되어 더 많은 한국적 세계 일류기업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특히 FTA 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무역업체가 관심만 기울이면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정재완 교수님
(blue@hnu.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태국 FTA 2010 년 적용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원화, 관세법 일부개정 등

태국 2010 년부터 ASEAN FTA 적용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원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태국 - ASEAN FTA 2010 년부터 적용

2007 년 6 월에 발효한 한·아세안 FTA 는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로 여기서 아세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말한다. 태국은 국내 사정으로 인해 상품무역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아 그 동안 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었으나 작년 2 월 상품무역협정에 추가 서명을 함으로써, 2010 년 1 월 1 일부터 태국 역시 아세안 회원국에 포함 되었다. 따라서 원산지가 태국인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사전에 협정 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인하여 협정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중 승용차, 화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40 개 품목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원화 또한 그 동안 법령이 이원화 되어 불편함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통합하였다. 본 법령 개정에서는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나라의 대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체약상대국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체약상대국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개정법령은 수출자·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 조사시 변호사 및 관세사가 조사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약상 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 개정

담보 제공 완화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

1 월 1 일부로 개정한 관세법에서는 관세담보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초 수입업자 및 관세법 위반업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수입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위반의 경중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금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증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 만원 이상에서 100 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가 보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등으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여 납세 의무를 완화하였다.

신한관세법인
인천경기지사

관세사 서 유 진

yjseo@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⑦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수입물품의 원재료구매에 따른 수수료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HQ545266 1993.06.30.)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거래사실(Facts)

1. 수출자 E(Exporter)는 수출물품(가죽)의 생산에 필요한 가죽의 구매를 직접하지 않고 구매대리인 A(Agent)에게 요청함
2. 구매대리인은 가죽생산에 필요한 가죽을 구매함
3. A 는 판매될 가죽에 대한 물품검수를 실시함과 동시에 E 에게 공급하기위한 선적을 수배함
4. E 는 구매한 가죽으로 가죽장갑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에 투입
5. 가죽장갑을 완성하여 수입자 I(Importer)에게 수출
6. I 는 E 에게 지불된 모든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음
7. I 는 물품대금 (가죽비용포함)과 A 에게 지불할 수수료를 함께 E 에게 송금 (수수료는 FOB 금액의 5%)
8. E 는 A 에게 Agent 수수료를 송금하고 가죽비용을 가죽공급자에게 송금
9. I 는 A 에게 지불한 구매수수료는 생산지원비가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0. I 는 이에 대한 근거로 I 는 선적비용과 가죽의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고 수수료는 E 의 어떠한 이익도 구성하지 않으며 이를 규정한 계약서를 제출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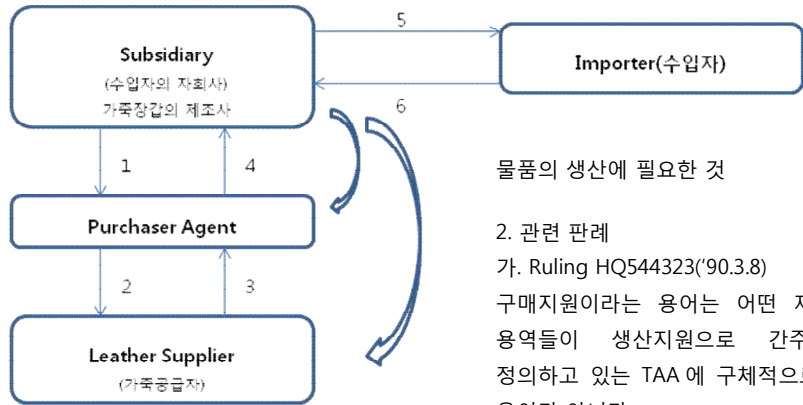
□ 쟁점(Issue)

A 에게 지불한 수수료가 생산지원비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가. 19 U.S.C. 1401a (B)(1)(C) TAA
 “과세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 금액에 5 가지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The preferred method of appraisal is transaction value, defined a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merchandise when sold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plus five statutory addition, including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any assist. 19 U.S.C. 1401a(b)(1)(C).

나. 402(h)(1)(A)

“생산지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물품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 것을 말한다.

(The term “assis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f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cost, by the buyer of imported merchandise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r the sale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of the merchandise:)

- 1) 재료, 구성요소, 부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입물품에 사용되는 물품
-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것
-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4)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기술, 설계, 도안, 공예, 디자인 등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2. 관련 판례

가. Ruling HQ544323('90.3.8)

구매지원이라는 용어는 어떤 재료 또는 용역들이 생산지원으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하고 있는 TAA 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용어가 아니다.

나. Ruling HQ544423('91.6.3)

의류제조자에게 공급되거나 수입의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피혁제품의 획득을 위하여 구매대리인에게 지불되는 수수료가 생산지원비의 일부로 간주되는지에 관하여 언급하고 생산지원의 일부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

□ 결정(Holding)

수입장갑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가죽의 구매 즉 생산지원의 획득을 위하여 E 를 통하여 I 가 A 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생산지원 획득비용의 일부이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간접지급금액으로 가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대리인이 진정한 의미의 구매대리인지의 여부와는 독립된 사안이므로 이 쟁점에 관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한관세법인
 인천경기지사 지사장
 관 세 사 감 동 기
dkkam@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장승희
대표 관세사

21 세기의 첫 번째 decade 를 보내고 새로운 10 년을 맞이하며 멋진 新年十年 계획을 세워 봐야지 한 것이 벌써 15 일 이 지나갔습니다. 신년벽두부터의 폭설과 강추위 등 외부 환경에 떠밀리며 지나간 날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새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개시하셨는지요?

저희 신한관세법인에서 세운 목표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고객 여러분들께 좀더 넓고 또 깊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다는 것 입니다. 매일의 수출입통관 서비스에 100% 노력을 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고객 여러분들보다 한발 앞에서 다양하며 깊이 있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Zoom-in Trade 의 내용을 통해 실질적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신한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도록 하겠다는 것 입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이것이 모여 회사의 발전이 되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나 위의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365 일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여러분의 책려(策勵)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세관 통관지원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시고 한남대학교의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재완교수님께서 새해를 여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관세의 적극적인 활용은 글로벌 시대에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는 훌륭한 말씀입니다. 긴 여행 후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음에도 좋은 글을 보내주신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2010 년에 변동되어 적용이 되고 있는 "세관장 확인 대상"에 대하여도 좀 더 상세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전파연구소의 제한된 업무 시간 등 많은 난항이 있었으나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0 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더욱 발전하시는, 연초에 세우신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We wish you have a happy new year!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FTA News-
FTA 의 성공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한다



이 준 혁 관세사
hj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최초민간 FTA 홈페이지
- "FTAGATEWAY" 개설
- FTA Self Checking System 특허출원

Voices From The Fields-
2010 년 1 월 1 일

한인도 CEPA 발효!



정 재 완 교수님
blue@hnu.kr

PROFILE

- 前)인천본부세관 통관지원국장
- 現)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저서:관세환급특례법 외 다수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태국-ASEAN FTA 2010 년

적용 등



서 유 진 관세사
yj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AEO T/F Team
- 인천경기지사
- 2008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US Rulings 연재⑦-

수입물품의 원재료 구매에 따른
수수료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



감 동 기 관세사
dkka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신한인비스타)
- 인천경기지사 지사장
- 듀폰 한국 IBM 등 다수업체 자율심사 수행